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637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63758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9. 27 선고 2019가소39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 선고 2020. 11. 12.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9. 27. 선고 2019가소394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가단22058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59138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7. 60,000,000원(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 2015. 3. 3.경 30,000,000원(이 사건 차용증)을 각 대여하였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상의 대여금 60,000,000원,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 30,000,000원 중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1. 5. 피고에게 24,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1. 16.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환최고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상환최고서'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상의 대여금 60,000,000원을 매월 3,000,000원씩 20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 11. 13. 현재 6,000,000원만 상환된 상태이므로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상의 대여금 잔액 54,000,000원, 피고의 주류만을 공급받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데 따른 위약금 18,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상의 대여금 60,000,000원 중 6,000,000원이 이미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주류거래약정서상의 대여금 60,000,000원 전액 등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송금액은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상의 대여금 60,000,000원,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 30,000,000원 채권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상환최고서를 잘못 발송하였고, 이를 바로잡아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는 추심을 하지도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2)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제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참조).

3)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뒤 관련 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상의 대여금 60,000,000원 중 6,000,000원이 이미 변제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6,0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권액 이상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최진숙

판사호성호

판사김민정